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9년 11월 27일
- 회부일자: 2019년 11월 29일

## 3.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39조의19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사무실 및 쉼터 수탁기관 제공
- 위탁기간 : '20. 3. 1. ~ ' 24. 12. 31.(4년 10개월)
- 수탁기관 :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포함)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노인보호전문기관 : 670,944천원(국비50%, 도비50%) ※ 기관당 335,472천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88,236천원(국비50%, 도비50%)

○ 위탁 주요사무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현장조사</li> <li>-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자 상담</li> <li>- 노인학대예방교육</li> <li>-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li> <li>- 치유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li> <li>- 그 밖에 쉼터입소 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 5. 검토의견

### 가.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되어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현장조사, 사례조치, 사후관리와 학대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 같은 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되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와 관련해,
  - 노인관련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의 제출되었음.

※ 現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구 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17	충주시 예성로 76
지정일	2004. 8. 24	2008. 10. 1
기관장	최정목('65. 9. 10.)	배선희('70. 8. 19.)
지원액	· 388,172천원 ※ 지원유형 :“가”형(인건비10명)	· 306,452천원 ※ 지원유형 :“다”형(인건비8명)
관 할	· 중남부권 6개 시군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 북부권 5개 시군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운영법인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기관장, 사회복지사 1명 겸직)

소재지	입주형태	면적	임차료	지원액	종사자	운영일
청주시 청원구	무료임차 (법인소유)	84.07㎡ (방3)	무상	185,412천원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11.4월

나. 검토 의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일 2018. 10, 01)에서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4회차 마다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에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5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개소 시점부터 공모절차 없이 도지사 지정으로 위탁이 추진되었고, 지금까지 재계약절차도 없이 계속 사업 위탁을 유지해 왔기에,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있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위탁지정 사유: 충북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시행 이전에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공동모금회 기금 사업으로 3년 동안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지원하는 '노인의 전화'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차원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충북도에서는 기존 사업 경력이 있는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지정위탁을 추진함. 또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14에 따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공개모집으로 수탁법인을 선정토록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르고, 「노인복지법」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부칙제2조에 따라 2020년 민간위탁 공고를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이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치로 타당함.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어르신 학대사태가 매년 보합세 또는 소폭 증가하고 있고,
  -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

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충청북도 노인학대 통계

□ 신고접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9. 9월말		
				충북	북부	합계
일반신고	395	484	476	243	219	462
학대의심	194	165	139	77	46	123
합 계	589	649	615	320	265	585

- 즉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른 위탁대상 사무에 포함된 다 할 수 있음.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도 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 본 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미동의 상태의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 절차를 밟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담당 관리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